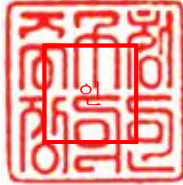


[별지 제12-6호] 계속입원조치 통지서(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)
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입원연장 통지서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속입원조치 통지서				
※ □에 √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.				
환 자	성 명	불상(남대문불상)	생년월일	미 상
	주 소	미상		
최 초 입 원 일		2015. 07. 25.		
입 원 기 간		2015. 07. 25. ~		
계속 입원 사유 와해된 언어와 행동, 충동조절의 어려움으로 2015. 07.25부터 은평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임. 환청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이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높아 보호병동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				
「정신보건법」 제24조제5항·제25조제8항·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·제15조제4항·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속 입원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리며, 귀하는 「정신보건법」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				
2015년 10월 27일				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				
불 상 귀하				